##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35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최기상・김동아・김한규

백승아 · 강경숙 · 박은정

김정호 · 박희승 · 김성환

정성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(3·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)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. 참고로,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,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.

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,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.

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"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"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이러한 국민주권 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 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,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 등). 법률 제 호

###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경일 제3조제1항 중 "운영할 수 있다"를 "운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	제2조(공휴일)		
호와 같다.	·		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	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		
따른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	조 각 호에 따른 국경일		
절, 개천절 및 한글날			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		
제3조(대체공휴일) ① 제2조에 따	제3조(대체공휴일) ①		
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			
일,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			
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<u>운</u>	<u>호</u>		
<u>영할 수 있다.</u>	영하여야 한다.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